

# 서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

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쓰레기"이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지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가정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2조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배출등

제 4 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 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 5 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지역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 6 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 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며 가정용 기본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각각 담아

야 한다.

② 가정용 기본봉투를 전부 사용한 배출자 및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색깔은 가정용 기본은 흰색, 가정용추가, 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 7 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서산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명 및 연락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산군 쓰레기봉투 설명서는 별표 2와 같다.

제 8 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가정용 기본봉투는 군수가 읍, 면을 통하여1인당 월60ℓ를 기준으로 세대별 상주인구에 따라 3개월 사용분씩을 당해 봉투사용을 하기 위한 첫월이 시작되기 5일전까지 각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봉투 공급후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전입한 날부터 차기봉투 공급일(금회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마지막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읍, 면사무소에서 해당량을

수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가정용추가봉투, 사업장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5퍼센트로 한다.

### 제 3 장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 9 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수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가정용 기본봉투의 공급 가격에는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 제작비용을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에는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적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 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며, 납기는 군수가 정하되,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또는 기본봉투의 공급 및 대형폐기물을 처리할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당해 봉투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에 의한다.

제 11 조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경우,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공급한 가정용 기본봉투를 기준으로 이의 사용분만을 징수하여야하며, 여유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수료의 납부의무승계) ①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새로이 전입한 세대주는 제8조 단서규정에 의한 가정용 기본봉투를 구입한 경우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주의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제11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 13 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 4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 14 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 15 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

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 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 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 여 별표6의 과태료 부가기준에 따라 과 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 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 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 19 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 을 받은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다.

제 20 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 는 서산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 21 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 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 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22 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 제 5 장 보 칙

제 23 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 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 [ 별 표 1 ]

##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6조 제2항 관련)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용도
5	25×35	가정용기본
10	33×40	가정요기본
20	41×49	가정용기본,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30	47×58	가정용기본,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50	56×67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100	71×85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herefore \text{여분의 길이 (cm)} = \frac{\text{가로길이 (cm)}}{\pi} + 5\text{cm}$$

[ 별 표 2 ]

# 쓰레기봉투의 사양(제7조 제3항 관련)

□ 20ℓ 용량

18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쓰레기 봉투 (20ℓ)

- 가정용 기본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타는 쓰레기는 홀수일, 안타는 쓰레기는 짝수일에 이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서 산 군 수

연락처 : 서산군 환경보호과  
(전화 : 60-3335)

4  
LDPE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쓰레기 봉투 (20ℓ)

- 가정용 기본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타는 쓰레기는 홀수일, 안타는 쓰레기는 짝수일에 이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서 산 군 수

연락처 : 서산군 환경보호과  
(전화 : 64-2121)

2  
HDPE

49cm  
49cm

4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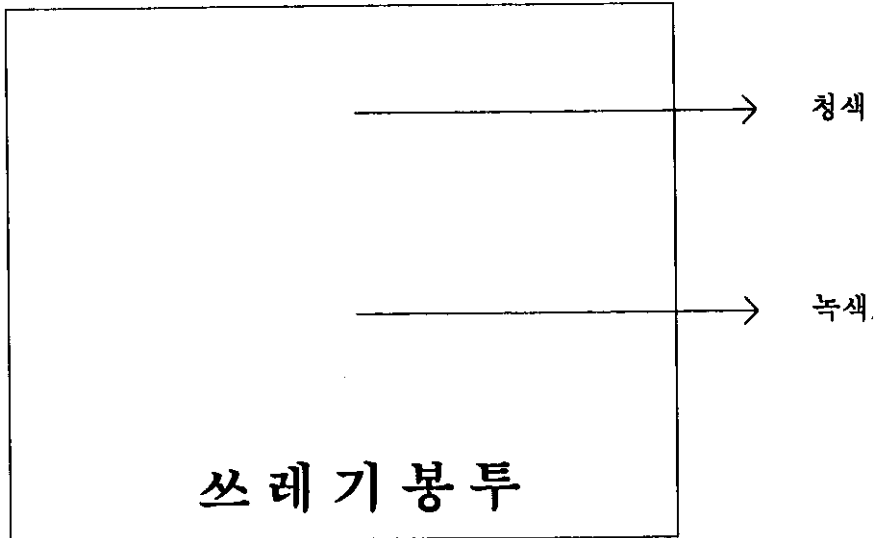
“재질을 LDPE로 한 경우” ←

“재질을 HDPE로 한 경우” ←

□ 5ℓ, 10ℓ, 30ℓ, 50ℓ, 100ℓ 용량 : 생략

## [ 별 표 3 ]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제8주 제3항 관련)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터 편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을 상기와 같이 청색 (DIC 137), 녹색 (PIC 92) 으로 2로 표현이기이 청색 (DIC 597), 녹색 (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일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별 표 4 ]

##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단위 : 매당)

용 량	가정용기본봉투 공급가격	가정용추가 · 사업장용봉투판매가격
5 l	25 원	75 원
10 l	50 원	150 원
20 l	100 원	300 원
30 l	150 원	450 원
50 l	250 원	750 원
100 l	500 원	1,500 원

## 【 별 표 5 】

##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9조 제1항 제2호)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콘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 별 표 6 】

# 과태료부과기준

(제17조 관련)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	200	500
나. 다만, 제4조 제1항 규정중 쓰레기 봉투를 묶지 아니한 경우	50 (매회마다)	-	-

- 주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  
 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19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2호 시식]

###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남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남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자도장		

### 영수필통지서

(서산군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남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서산군수 귀하
수납날자도장		

### 영수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남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380mm X 180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 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신 : 발신 시 산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④ 부과기관		⑤ 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 통지일	납부기한		⑥ 금액	납 부 의 무 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비 고
			④ 당초	⑤ 독촉		⑦ 성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368mm × 257mm 인쇄용지 특급 34g/㎡